

●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정 1979. 3. 1.	학칙 제 926호, 개정 2008. 6.25.
	개정 1980. 3. 3.	학칙 제 941호, 개정 2008.11.10.
	개정 1981. 3. 1.	학칙 제 946호, 개정 2009. 1.23.
	개정 1982. 3. 1.	학칙 제 947호, 개정 2009. 1.23.
	개정 1983. 6.29.	학칙 제 957호, 개정 2009. 3.18.
	개정 1984. 6.22.	학칙 제1102호, 개정 2009. 7. 3.
	개정 1984.12. 7.	학칙 제1105호, 개정 2009. 7.20.
	개정 1985. 9.17.	학칙 제1109호, 개정 2009. 9. 3.
	개정 1986. 3. 1.	학칙 제1119호, 개정 2009.10.28.
	개정 1987. 5.14.	학칙 제1124호, 개정 2009.11.20.
	개정 1988. 3.16.	학칙 제1136호, 개정 2010. 2.24.
	개정 1988. 5. 2.	학칙 제1144호, 개정 2010. 5.12.
	개정 1989.12.30.	학칙 제1146호, 개정 2010. 7. 1.
	개정 1990.11. 1.	학칙 제1160호, 개정 2010.12. 1.
	개정 1991. 9.14.	학칙 제1164호, 개정 2010.12. 8.
학칙 제 245호,	개정 1992. 2. 7.	학칙 제1165호, 개정 2011. 1. 5.
학칙 제 264호,	개정 1993. 3. 1.	학칙 제1167호, 개정 2011. 1.28.
학칙 제 267호,	개정 1993. 4. 1.	학칙 제1174호, 개정 2011. 2.28.
학칙 제 297호,	개정 1994. 3.11.	학칙 제1181호, 개정 2011. 4.18.
학칙 제 318호,	개정 1995. 3. 1.	학칙 제1193호, 개정 2011. 9. 2.
학칙 제 324호,	개정 1995. 4.11.	학칙 제1199호, 개정 2011.12. 1.
학칙 제 353호,	개정 1996. 3. 1.	학칙 제1207호, 개정 2011.12.28.
학칙 제 381호,	개정 1997. 4. 7.	학칙 제1213호, 개정 2012. 2.29.
학칙 제 414호,	개정 1998. 6.19.	학칙 제1219호, 개정 2012. 3.28.
학칙 제 420호,	개정 1998. 7. 9.	학칙 제1220호, 개정 2012. 3.29.
학칙 제 423호,	개정 1998. 8.21.	학칙 제1248호, 개정 2012. 7.20.
학칙 제 430호,	개정 1999. 2.27.	학칙 제1271호, 개정 2012.10. 8.
학칙 제 431호,	개정 1999. 3. 1.	학칙 제1343호, 개정 2012.10.11.
학칙 제 449호,	개정 1999.12. 7.	학칙 제1360호, 개정 2013. 1.15.
학칙 제 466호, 전부	개정 2000. 3. 1.	학칙 제1379호, 개정 2013. 5.21.
학칙 제 476호,	개정 2000. 4.18.	학칙 제1383호, 개정 2013. 6.26.
학칙 제 492호,	개정 2000. 9.15.	학칙 제1397호, 개정 2013. 9. 3.
학칙 제 512호,	개정 2001. 2.21.	학칙 제1410호, 개정 2013.11.27.
학칙 제 524호,	개정 2001. 8.25.	학칙 제1428호, 개정 2014. 2.27.
학칙 제 608호,	개정 2001.11.28.	학칙 제1458호, 개정 2014. 4.23.
학칙 제 621호,	개정 2002. 3. 6.	학칙 제1463호, 개정 2014. 4.29.
학칙 제 625호,	개정 2002. 3.20.	학칙 제1472호, 개정 2014. 7.25.
학칙 제 633호,	개정 2002. 6.17.	학칙 제1480호, 개정 2014. 8.28.
학칙 제 644호,	개정 2002. 9. 5.	학칙 제1486호, 개정 2014.10.30.

학칙 제 647호, 개정 2002.11.29.	학칙 제1497호, 개정 2015. 1.29.
학칙 제 664호, 개정 2002.12.10.	학칙 제1505호, 개정 2015. 2.23.
학칙 제 668호, 개정 2003. 1.15.	학칙 제1510호, 개정 2015. 3.30.
학칙 제 674호, 개정 2003. 2.28.	학칙 제1528호, 개정 2015. 6.29.
학칙 제 688호, 개정 2003. 9.25.	학칙 제1535호, 개정 2015. 8.19.
학칙 제 696호, 개정 2003.10.22.	학칙 제1539호, 개정 2015. 8.27.
학칙 제 698호, 개정 2003.12.31.	학칙 제1544호, 개정 2015.11. 2.
학칙 제 716호, 개정 2004. 4. 8.	학칙 제1566호, 개정 2016. 4.18.
학칙 제 721호, 개정 2004. 6. 3.	학칙 제1589호, 개정 2016. 5.30.
학칙 제 743호, 개정 2005. 2. 1.	학칙 제1605호, 개정 2016. 7. 1.
학칙 제 744호, 개정 2005. 2.16.	학칙 제1624호, 개정 2016. 9.28.
학칙 제 751호, 개정 2005. 4. 1.	학칙 제1644호, 개정 2016.12.15.
학칙 제 781호, 개정 2005. 6.14.	학칙 제1647호, 개정 2016.12.30.
학칙 제 795호, 개정 2005.10. 4.	학칙 제1684호, 개정 2017. 2. 8.
학칙 제 797호, 개정 2005.12.29.	학칙 제1693호, 개정 2017. 3. 8.
학칙 제 806호, 개정 2006. 1.17.	학칙 제1729호, 개정 2017.11.28.
학칙 제 813호, 개정 2006. 2.24.	학칙 제1735호, 개정 2018. 1.24.
학칙 제 821호, 개정 2006. 5.24.	학칙 제1739호, 개정 2018. 2.28.
학칙 제 824호, 개정 2006. 6.30.	학칙 제1756호, 개정 2018. 3.28.
학칙 제 833호, 개정 2006.11. 8.	학칙 제1765호, 개정 2018. 6.15.
학칙 제 837호, 개정 2007. 1.11.	학칙 제1780호, 개정 2018. 9.11.
학칙 제 846호, 개정 2007. 3. 1.	학칙 제1782호, 개정 2018.11. 1.
학칙 제 891호, 개정 2007.10.10.	학칙 제1791호, 개정 2018.12.31.
학칙 제 897호, 개정 2007.12.10.	학칙 제1800호, 개정 2019. 2.13.
학칙 제 908호, 개정 2008. 2.27.	학칙 제1820호, 개정 2019. 3.15.
학칙 제 913호, 개정 2008. 3.27.	학칙 제1830호, 개정 2019. 4.11.
학칙 제 916호, 개정 2008. 4.28.	

제1 장 총칙

제1 조(목적) 이 학칙은 강릉원주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과 교육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2.13.>

제2 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강릉원주대학교(이하 “이 대학교” 라 한다)는 자유, 진리, 창조를 교훈으로 삼아 창의적 학문 연구와 인간 존중 교육을 통해 역량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여 국가와 인류에 공헌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8., 2019. 2.13.>

② 이 대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신설 2017.3.8>

1.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으로 도전하는 인재 양성
2. 균형 잡힌 인성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배려하고 협력하는 인재 양성
3. 올바른 가치관으로 본분에 충실하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인재 양성

제3조(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2. “석사과정”이라 함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3. “박사과정”이라 함은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4. “일반대학원”이라 함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5. “특수대학원”이라 함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6. “전임교수”라 함은 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2.7.20>

제4조(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 대학과 일반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수요가 현저하고,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의 일반관례 및 이 대학교의 교육목적과 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임교수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5조(학과(부) 및 전공의 설치) ① 학과와 학부는 대학(원)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다.

- ② 학과와 학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며, 그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의 일반관례, 사회적수요 및 이 대학교의 교육목적·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임교수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 ③ 학사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 동일명칭의 학과나 학부 또는 전공을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 ④ 학부 내에 전공을 따로 두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 ⑤ 대학원의 각 학과에 전공을 둘 수 있고, 일반대학원에 학문적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전공)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으며, 전공분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위과정의 설치) ① 학과나 학부에 학위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성격, 이 대학교의 교육목적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임교수 및 학생의 수, 교육시설 등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③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이 상호 연계된 과정(이하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2.27>

제7조(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등)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산업교육 특별과정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직업교육 훈련과정(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0.8>

- ②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및 그 부담, 학생의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임교수의 소속 및 교수시간) ① 이 대학교의 교원은 전공에 따라 각 대학의 학과(부), 부속시설 등에 소속된다. 다만, 교직과목에 대한 교육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인문대학에 교직과정부를, 교양과정에 대한 교육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해람교양교육원에 교양교육부를 둔다. <개정 2013.11.27., 2016.12.30.>

「학칙」

② 전임교수의 소속 및 겸임은 총장이 정한다.

③ 전임교수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겸임교원등) ①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학생의 소속) 학생은 대학(원)의 1개 학과나 학부 또는 협동과정에 소속된다. 다만, 대학별로 입학한 학생은 학과(부) 배정 전까지 그 대학에 속한다.

제11조(교육과정의 운영) <개정 2012.10.8>

① 교육과정은 각 학부 또는 학과(전공)단위를 중심으로 각급 학위과정에 따라 일관성 있게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학부 또는 학과(전공)간에 상호조정,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교육과정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교육의 위탁) <개정 2012.10.8>

① 이 대학교 학사과정 학생의 교육은 교과운영, 학생지도, 교육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타 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원과정 학생의 교육은 각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각급 학위과정에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교육조직

제14조(대학 및 대학원) ① 이 대학교의 강릉캠퍼스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치과대학을 두며, 원주캠퍼스에 보건복지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을 둔다. <개정 2013.9.3>

② 이 대학교에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두고, 특수대학원으로는 경영·정책과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을 둔다.

③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① 신입생 모집은 학과(부) 또는 학과군(이하 “모집단위”라 한다)으로 하며, 학부과정 및 대학원 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 별표 [V]와 같다.

② 모집단위별 학과(전공)의 선택과 이수는 학생의 자율에 맡기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대학장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대학원에는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 및 대학원장(이하 “학(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대학(원)의 행정과 학생의 교육을 관장한다.

제17조(학과(부)장, 주임교수) ① 대학 학과에는 학과장, 학부에는 학부장과 전공주임교수, 대학원에는 학과(전공)주임교수를 두며, 대학원의 학과(전공)주임교수는 대학의 해당학과 학과장이 겸임하며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에 해당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학과장이 아닌 자를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② 학과(부)장 및 학과(전공)주임교수는 학과(부), 전공의 운영과 소속 학생의 교육을 전담한다.

제3장 행정조직

제18조(총장) ① 총장은 이 대학교의 운영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이 대학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원주캠퍼스부총장 및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2.10.8., 2016.12.30.>

③ 총장임용후보자는 선거방식이 아닌 공모제에 의해 선정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3.28>

제18조의2(부총장) ① 총장이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장 2인을 둔다.

② 교학부총장은 교무처장을 겸임하며, 교무와 학사에 관하여 총장의 명을 받아 총괄한다.

③ 원주캠퍼스부총장은 원주캠퍼스의 운영에 관하여 총장의 명을 받아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2.3.29, 개정 2013.6.26., 2016.12.30.>

제19조(하부조직)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무처, 학생처, 기획협력처, 사무국 및 산학협력단을 두고, 처·국·단에는 각각 처장, 국장, 단장을 두며, 기획협력처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2.8., 2012.3.29., 2018. 2.28.>

② 삭제 <2012.3.29>

③ 교무처에는 교무과, 학사운영과를, 학생처에는 학생지원과, 장학실을 두고, 기획협력처에는 기획평가과, 대외협력과를, 사무국에는 총무과, 재무과, 시설과를 두며, 원주캠퍼스에는 통합 행정지원부를 둔다. <신설 2010.12.8, 개정 2012.3.29, 2012.10.8., 2013.6.26., 2016.12.30.>

④ 삭제 <2012.3.29>

⑤ 대학(원)의 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별표[VIII]의 통합 행정실을 둔다.

⑥ 기타 조직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른다.

제19조의2(산학협력단) ① 이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3.29>

제19조의3(입학본부) ① 학생의 선발, 대학입시홍보 및 입학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학본부를 둔다.<개정 2016.7.1.>

② 입학본부에는 입학과, 입학전형실을 두고 입학본부장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3.29., 개정 2016.5.30., 2016.7.1. >

제19조의4 삭제 <2016.7.1.>

제19조의5(사무분장)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3, 제19조의4에 따른 조직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9>

제20조(교직원 및 조교) ① 전임교수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학칙」

②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21조(기타행정조직) 이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9조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행정조직과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삭제 <2012.3.29>

제23조(학교기업) ①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이 대학교의 교지 및 교사시설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교지 및 교사 밖에도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 대학교가 소재하는 도내로 한다.

③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순수익의 30% 범위 내에서 순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 1인당 연간보상금은 순수익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해당 학과(부)의 연간 등록금 총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8>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교무회) ① 이 대학교의 운영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무회를 둔다.

② 교무회는 총장, 각 부총장, 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은 제외한다), 각 단과대학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해람교양교육원장,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장, 입학본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8, 2013.1.15., 2013.6.26., 2016.4.18., 2016.12.30., 2017.3.8., 2018. 2.28.>

③ 교무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회의는 총장이 소집한다.

④ 교무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또는 제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대학, 학과(부), 부속시설, 각종위원회 설·폐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업, 졸업 등 제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수채용방침,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장학금지급 학생후생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7. 대학회계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18., 2016.12.30.>
8. 교수회, 평의원회에 부의되는 사항 <개정 2016.4.18>
9.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교무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8. 2.28.>

⑥ 그 밖의 교무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 2.28.>

제25조(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① 이 대학교 교원 인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

「학칙」

②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되, 여성위원이 20%이상 되어야 한다.

제26조(교수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① 이 대학교에 임용되는 교수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교수자격 심사기준을 정한다.

②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교수업적 평가에 관한 사항) ① 이 대학교 전임교수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수업적 평가기준을 정한다.

②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수료·학위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2. 학부(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대학원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의2(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이 대학교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4.18, 개정 2012.10.8>

제29조(각종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위원회 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각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부속기관(시설) 및 연구소

제30조(부속시설 및 연구소) 이 대학교의 부속시설 및 연구소의 명칭,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의2(도서관) ①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1항에 따라 대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 발전계획수립, 도서관운영위원회, 사서,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자료의 이용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기타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8.>

제31조(부설학교) ① 이 대학교 원주캠퍼스에 부설유치원을 둔다.

② 부설유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학생군사교육단) ① 이 대학교에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시설령」 제2조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입학과 등록

제33조(입학시기) ① 입학허가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② 편입학, 재입학 및 시간제 등록생 입학허가 시기는 매 학기 초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4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치과대학 치의예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개정 2011.2.28>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예정자 포함)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다만, 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 일본학 교육, 일반사회교육, 관광교육전공은 현직 교직원(교육학전공은 현직 교원)인 자 및 현직 교직원이 아닌 자는 해당 전공 표시교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모집한다.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자(예정자 포함)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35조(학사과정 입학전형) ① 신입생 전형방법은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내용, 대학수학능력 시험, 대학별고사, 면접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실기고사, 신체검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하여 이를 사정할 수 있다.

② 체육, 문학, 어학, 수학, 과학 및 예능특기자 등의 전형방법은 따로 정한다.

③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포함) 졸업자 중에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또는 1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형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0.30>

④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30>

제36조(대학원의 입학전형) ① 대학원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과정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확정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 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

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면접고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9>

제38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허가 할 수 있으며, 편입학 자격은 대학에서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② 학사학위 소지자는 제3학년(치의학과는 제1학년)에 학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 편입학 허가인원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간호학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 1.>

③ 의료인력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치위생학과 및 유아교육과 4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 허가인원은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신설 2010.12.8., 개정 2018.11. 1.>

④ 이 대학교와 연계협약이 체결된 전문대학에서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허가인원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 1.>

⑤ 편입학자의 전형(학과 또는 학부모집인원, 지원자격, 선발일정 및 과목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의2(대학원 편입학) ① 이 대학교 및 타 대학(교)의 각 대학원에 재적한 사람에게는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의 전형 방법 및 절차 등은 매 모집시 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편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전공 또는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학점 이외에 해당 학과(전공)에서 요구하는 영역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5.>

제39조(전학·전과 및 전공변경) ①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의 같은 학년으로의 전과 및 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모집단위별(학과·전공) 입학정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모집단위내의 전과 및 전공변경은 3학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치의예(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로는 전과 할 수 없다. <개정 2011.12.1>

③ 교내전학 또는 전과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적하였던 학과(부)의 동일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재입학자에게는 재입학교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재입학 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입학허가·등록 및 입학허가 취소)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기일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9.28.>

「학칙」

- ② 재학생은 매학기 등록기일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9.28.>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제 6 장 수학과 학적

제4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 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43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치의예과 2년, 치의학과는 4년으로 구분한다.

② 제74조에 해당하는 조기졸업자의 수업연한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치의학과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8>

③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수업연한은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단서조항 신설 2014.2.27>

④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정책과대학원: 논문학위과정은 5학기(2년6월)로 하고, 무논문학위과정은 6학기(3년)로 한다. <개정 2012.10.8>

2. 교육대학원 5학기(2년6월)

3. 산업대학원 논문학위과정은 5학기(2년6월)로 하고, 무논문학위과정은 6학기(3년)로 한다. 다만, 논문학위청구자의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1학기) 이내로 하고, 학·군제휴 협약에 의한 입학자는 무논문학위청구 및 수업연한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9.2>

제44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1, 2012.10.8>

② 편입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편입 또는 재입학한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11.12.1>

③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6>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6년 <개정 2013.6.26>

2. 특수대학원 4년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5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다만,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 수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4학기 범위 내에서 이를 나눌 수 있다.

「학칙」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③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2학기 개시일을 2주일 범위 내에서 앞당길 수 있다.

제46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는 필요에 따라 하기 또는 동기 휴가기간 중에 개설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7조(수업일수) ① 학사과정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을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제48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이동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현장실습수업 또는 집중수업의 형태로 실시한다. <개정 2017.11.28., 2018.12.31.>

②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하며, 매 학기별 개설 가능한 교과목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교양은 대학에 개설된 총 교양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12.31.>
2. 전공은 각 전공(학과)에 개설된 총 전공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12.31.>

③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생의 현장적응능력 개발을 위하여 현장실습만으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동수업은 국가 대표선수를 위해 대학소재지 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신설 2017.11.28.)

⑦ 학생의 창업역량강화를 위해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8. 6.15.>

제49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② 하기휴가, 동기휴가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업일이라도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할 수 있다.

④ 비상재해, 기타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50조(휴학)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2.27., 2018. 1.24.>

② 휴학기간은 통산 6학기(치의예과는 3학기), 계속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 및 장애로 인한 장애학생 휴학은 4학기(2년 이내)로 한다. 육아 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6세 이하로 하며, 배우자 남학생의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7.1, 2014.2.27, 2015.1.29> <단서조항 신설 2013.1.15>

③ 제2항의 휴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7.1>

「학칙」

1. 병역 의무복무, 임신·출산·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통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3.1.15, 2014.2.27>
2. 통산 6학기를 휴학하였으나 질병으로 수학에 지장이 있을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하여 2학기 내에서 추가로 휴학 할 수 있다.
3. 휴학 중인 학생이 가사사정, 건강 등의 사유로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산 휴학기간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신입생은 질병, 병역 또는 임신·출산·육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 ⑤ 대학원의 휴학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임신·출산·육아 휴학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50조 제1항~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5.21>

1. 일반대학원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5>
2. 경영·정책과학대학원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교육대학원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추천에 의거 1년 이상 외국유학을 하거나, 법령에 정해진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예외로 하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6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대학원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4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1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된 후,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8>

② 군입대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 복학기간에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18. 9.11.>

제52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개정 2017.11.28.>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1.5>
3. 이중학적을 보유한 자
4. 삭제 <2012.2.29>
5.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개정 2012.10.8>
6. 학사과정생의 경우 수강신청 취소 마감일까지 수강신청을 아니한 자 <개정 2017.11.28.>
7. 제64조제3항의 유급횟수를 초과한 자 <개정 2012.10.8., 2017.11.28.>
8. 제63조에 따른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또는 합산 5회 받은 자, 다만, 졸업학기에 받게 된 학사경고는

합산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재입학자는 재입학 후의 학사경고 횟수를 적용한다. <신설 2017.11.28.>

9. 기타 사유로 계속적인 학업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신설 2018. 9.11.>

제 7 장 교과의 이수와 졸업

제54조(교육과정) ① 이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12.10.8, 2014.2.27, 2015.1.29>

②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질을 갖춘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학부 또는 학과(전공)에 교직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2.27>

③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재학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타 대학(국내외 정규대학에 한함)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⑤ 우수졸업생 배출을 위하여 졸업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전문대학과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학교육인증제를 실시하는 학과(부)는 비인증교육과정과 구분되는 별도 명칭의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5조(이수단위)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실습, 실기, 체육의 이수단위는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정한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7.1>

제56조(교과이수) ① 교양과목은 융합학문,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 치의학 등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개설하고,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치의예과,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는 예외로 하며, 치과대학 치의학과와 전공기초 과목은 치과대학의 치의예과에서 개설하고 그 수료학점은 75학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2.28., 2012.2.29., 2014.2.27., 2015.1.29., 2017.2.8.>

② 전공과목 최소 이수학점은 48학점 이하로 하며, 학과(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다만,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2.27., 2017.2.8.>

③ 교과의 이수는 심화전공과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중 반드시 하나를 택하여 이수한다. 다만, 공학인증제 실시학과는 공학교육 인증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제57조(인증이수) ① 국가 및 공공기관, 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부전공 및 복수전공) ① 부전공의 이수는 당해 부전공학과(전공)의 지정된 필수교과목을 포함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복수전공과 관련한 신청자격, 해당분야 전공, 교과이수, 대상학부 또는 학과 및 전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0.8>

④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하고,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학칙」

⑤ 복수전공 이수자는 졸업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9조(심화, 복합, 연계전공) 다양한 학문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심화전공, 복합전공, 연계전공을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화전공의 전공 이수학점은 66학점 이상으로 하며 학과(전공)별로 따로 정한다.
2.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0조(수업시간표) 매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한 총시간의 1/4이상 결석하면,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③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62조(학업성적) ① 학부과정의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상대평가로 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학업성적의 상대평가기준과 평가 비율은 따로 정한다. 다만, P(pass) 또는 N(non pass) 그리고 S(success)으로 평가하는 교과목 및 비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2.8.>

등급	실점	평점
A+	95 ~ 100	4.5
A0	90 ~ 94	4.0
B+	85 ~ 89	3.5
B0	80 ~ 84	3.0
C+	75 ~ 79	2.5
C0	70 ~ 74	2.0
D+	65 ~ 69	1.5
D0	60 ~ 64	1.0
F	0 ~ 59	0

② 과목별 성적은 D0 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③ 교과목 성적등급이 C+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 할 수 있으며, 재이수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다만, 재이수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 성적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5.2.23>

④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의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64조(유급)에 따르며, 재이수 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신설 2015.2.23>

⑤ 수강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개정 2015.2.23>

⑥ 대학원 학업성적 등급과 평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23>

등급	실점	평점
A+	95 ~ 100	4.5
A0	90 ~ 94	4.0
B+	85 ~ 89	3.5
B0	80 ~ 84	3.0
C+	75 ~ 79	2.5
C0	70 ~ 74	2.0
F	70 미만	0(낙제)

다만, 논문연구, 현장연구, 전공특별연구,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교육봉사활동 학점은 S(취득) U(낙제)

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30>

⑦ 대학원과정의 각 교과목 성적은 C0 등급(평점 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기 수업 일수 4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2.23>

제63조(학사경고) ①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다만, 치의예과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8>

② 제1항의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대학장은 다음 학기 수강할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유급) ① 치의예과는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2.0미만인 경우 또는 수료에 필요한 영역별 학점을 2학년 2학기까지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급되며, 유급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29>

1.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2.0미만인 경우에는 2학년 1학기부터의 전공기초 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2. 수료에 필요한 영역별 학점을 2학년 2학기까지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영역별 학점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② 치의학과는 당해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2.0미만인 경우 또는 배정된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되며, 유급될 경우 당해학년에 이수한 모든 학점이 무효로 되며 이를 재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급된 학년의 기 이수 성적 중 B+급 이상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③ 치의학과의 유급은 학년 단위로 한다. 유급은 재학기중 치의예과는 2회, 치의학과는 3회에 한한다. <개정 2015.1.29>

제65조(학점의 인정) ①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치과대학의 치의학과는 학년말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3.8>

③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으로 반영된 것은 취소한다.

④ 그 학기에 수업한 총시간수의 1/4이상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으로 인한 결석처리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3.8>

⑤ 교양과목 중 따로 지정된 과목의 학점은 특별시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특별시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2017.3.8>

⑦ 이 대학 재학생으로서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 위탁교육을 받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이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3.8>

⑧ 삭제 <2012.10.8>

⑨ 삭제 <2014.4.29>

⑩ 삭제 <2014.4.29>

⑪ 군 복무중인 자의 교육과정 이수(원격강좌 수강, 평가인정 군 교육훈련이수)취득학점은 타 대학 취득 학점 포함 졸업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⑫ 입학 전 이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이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8.>

「학칙」

⑬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학점인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3.8>

제66조(이수학점) ① 매 학기별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는 18학점, 공학인증프로그램학과와 치의예과는 20학점, 그 외 학과는 21학점까지, 치의학과는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75이상인자는 이수가능학점에 3학점까지 추가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15.2.23., 2018.12.31.>

② 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일반대학원의 이수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수대학원의 매학기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경영·정책대학원 매 학기 6학점 이내
2. 교육대학원 매 학기 6학점 이내
3. 산업대학원 매 학기 9학점 이내

제67조(수료학점) ①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27>

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130학점인 학과(부)	135~140 학점인 학과(부)	치의예과 (75학점)	치의학과 (159학점)
제1학년	32	36	38	39
제2학년	64	72	75	81
제3학년	96	108		119
제4학년	130	140		159

②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때에는 (별지서식 1-3호)의 학년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대학원과정의 수료학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공필수는 3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 특수대학원의 수료학점은 26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경영·정책과학대학원은 32학점, 교육대학원은 32학점, 산업대학원은 37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수료성적은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경영·정책과학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의 무논문학위과정은 3.5 이상이어야 한다.

제68조(편입 및 재입학자의 학점) ① 편입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이 대학교가 인정한 학점외에 당해 학부(과)의 졸업에 필요한 부족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참작하여 학점 및 이수학기를 재사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69조(전학 또는 전과자의 학점) 전학 또는 전과한 자는 전적학과(전공)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 중 당해 전과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학점외에 소정의 잔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70조(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여 학과(부)별로 따로 정하며, 재학 중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학점 내용이 제56조, 제58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대학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제67조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

제71조(졸업논문 등) ① 학과(부)또는 전공별로 필요에 따라 졸업논문, 공인된 표준 외국어능력시험 또는 각종 자격증 등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연계전공, 학·석사 연계과정 포함)의 경우에는 제1항의 졸업논문 등을 졸업요건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4.2.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졸업요건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대학원의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2조(졸업 및 학위)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54조의 졸업인증제 및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제71조의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이 부과된 경우 이를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소정의 증서(별지서식 제1-1호)에 의하여 별표Ⅵ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위를 수여받는 외국인 학생에게는(별지서식 제1-1호) 외에(별지 서식 제1-1-1호, 제1-1-2호, 제1-1-3호)의 영문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8.19>

② 제1학기말에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당해 학년도 1학기말에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졸업요건으로 부과한 졸업논문, 공인된 표준외국어능력시험, 각종 자격증 등의 심사에 불합격한 자 및 졸업사정에서 수료자로 판정된 자는 수료증서(별지 서식 제1-2호)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한 자는 제44조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 이내에 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9.3>

④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연기를 원하는 경우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1학기씩 2학기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취득 유예 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되,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0.7.1., 2019. 2.13.>

⑤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7.1., 2019. 2.13.>

⑥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 및 제3-1호, 제4-3호, 제5-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학위는 석사·박사 및 명예박사로 하고,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논문학위과정과 무논문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대학원의 전공별 학위과정은 별표[Ⅶ]과 같다.

제72조의2(명예졸업증서 수여) ① 학사과정 재적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별지 서식 제1-4호)의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4.4.23>

②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4.4.23>

제73조(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이 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4조(조기졸업) ① 학점초과취득, 계절학기 이수 등의 방법으로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제6학기 또는 제7학기에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치의학과 제외)

② 조기졸업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할 학기 초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5조(졸업취소) 졸업생으로서 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는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개정 2015.1.29.>

제8장 학생활동

제76조(학생회) 학생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건전한 활동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강릉원주대학교 총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제77조(기능)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 예술, 체육활동
2. 의료 및 기술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대학 또는 주변의 각종 재난시 방제 및 지원 활동
4. 기타 학생자치활동

제78조(기타 단체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상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9조(학생지도상담위원회) ① 학생회의 운영지도와 학생의 상벌심의를 위하여 학생지도상담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상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생지도상담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0.8>

④ 학생지도상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0조(학생상담지도)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생회 조직에 관한 사항
4.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학생생활 제반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취업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1조(호력정지) 본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되며, 학도호국단으로 자동 전환된다.

제82조(학생상담지도) 학생지도는 매 학년 초에 해당 학과(부)장이 자율적으로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지도교수에게 분담시키며, 해당 지도교수는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3조(학생활동제한) 학내에서는 수업 및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단적 행위, 등교거부, 수업방해, 기물파괴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84조(집회등의 지도) 학생의 집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5조(간행물지도) 학생이 정기, 부정기 간행물 발행을 희망할 경우 총장은 언론원장을 임명하여 지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포상과 징계

제86조(교칙준수) 학생은 본 학칙 및 따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 하고, 덕성을 기르며, 교양을 높이어 장래 지도자로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87조(결석신고) 학생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대학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결석이 7일(중간공휴일 가산)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포상)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그 행위가 타의 모범이 되어 표창할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89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제8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5.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6.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② 징계는 사회봉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 학생의 징계는 학생지도상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장 등록금 및 장학금 <개정 2011.1.5.>

제90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제 등록생은 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1.1.5>

② 등록금의 납부기한은 매학기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1.1.5>

③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제1항의 등록금과 함께 징수하거나 또는 그 때마다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2.10.8>

제90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이 대학교에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5>

제91조(등록금의 면제 및 감액)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상 등록금 납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 분납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1.5, 2012.10.8>

「학칙」

②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을 이유로 감액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5>

③ 수업 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과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학생이 희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계열의 등록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1.1.5., 2016.4.18., 2019. 2.13.>

1. 학사학위 과정 <개정 2011.1.5>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개정 2011.1.5>

-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개정 2019. 2.13.>
- 나.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92조(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 및 법령에 의거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1.5>

제93조(장학금 및 연구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대학원생에 한함)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및 연구비의 종류, 지급방침, 장학생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4조(휴학자의 등록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학이 허가되었을 때는 그 학기부터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5.>

제11장 외국인 특별생, 수강생, 위탁교육생 및 시간제등록생

제95조(입학허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정원 외에 특별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 1. 학사과정: 외국인, 재외국민, 외교관 자녀 및 정부부처의 위탁생,
- 2. 대학원과정: 정부부처의 위탁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② 경영·정책과학대학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Ⅲ]의 정원 외에 별도의 정원으로 입학할 수 있다.

- 1.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모국유학생 및 외국인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정의 전형을 거쳐 정원의 2% 이내
- 2.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단, 이들의 학생수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 <개정 2012.2.29, 2014.2.27>

③ 산업대학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별표 [V]의 정원 외에 별도의 정원으로 한다.

- 1. 삭제 <2012.2.29>

「학칙」

2. 외국인 학생(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삭제 <2012.2.29>
4. 삭제 <2012.2.29>
5.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단, 이들의 학생 수는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 <신설 2012.2.29, 개정 2014.2.27>

제96조(시간제 등록생) ① 시간제 등록생은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학과(부)별 정원은 해당학과(부)별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치과대학은 선발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학점의 1/2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③ 시간제 등록생은 제70조에 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심사 등을 통과한 자에게는 제72조에 의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④ 시간제등록생의 자격, 선발방법, 등록금 책정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5>

제97조(대학원 연구생) ① 대학원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생을 둘 수 있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특정한 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일반연구생

2.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희망하는 수료 후 연구생

② 연구생의 연구기간은 수업연한은 2학기로 하되,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2-1호, 제3-2호, 제4-2호, 제5-3호 서식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8조(이수)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99조(편입학 및 수강) ①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입학 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외국교육기관 또는 협력대학 등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학생은 이 대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수강생등의 자격, 등록, 수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공개강좌

제100조(공개강좌) ① 이 대학교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대학 및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강좌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③ 공개강좌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장 교수회

제101조(교수회) ① 이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임교수로 구성하고 교수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총장이 부의한 사항에 한하여 총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2.7.20., 2012.10.2., 2015.8.27.>

③ 교수회는 대의기구로 교수평의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5.8.27.>

④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교수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8.27.>

1. 총장의 요구 시
2. 교수회장의 요구 시
3. 교수평의원 2분의 1 이상 요구 시
4. 교수회 회원 5분의 1 이상 요구 시

⑤ 교수회는 휴직자, 출장자, 연구년 및 기타 공무 수행자 등을 제외한 재직 전임교수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전임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회에 걸쳐 성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서면 또는 화상 회의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⑥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8.27., 2019.4.11.>

1. 이 대학교의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총장, 교수회장, 교수평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1.>
3. 재직 전임교수 5분의 1이상 또는 단과대학 교수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9. 4.11.>
4. 그 밖에 총장이나 교수회장이 대학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9.4.11.>

⑦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수평의회에 심의 요청한다. <신설 2015.8.27.>

1. 교학부총장, 원주캠퍼스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의 임명동의 및 해임건의<개정 2016.12.30., 2019.4.11.>
2. 대학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19.4.11.>

⑨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8.27.>

제102조(단과대학 교수회) ① 각 단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별로 단과대학교수회를 둔다.

② 단과대학교수회는 소속대학 전임교수로 구성하고, 단과대학수석평의원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5.8.27.>

③ 단과대학교수회는 소속대학장 또는 단과대학수석평의원이 소집한다. 다만, 소속대학 전임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7.>

④ 단과대학교수회는 소속대학 재직전임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전임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단과대학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과(부)

「학칙」

장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8.27.>

1. 학칙의 개정 또는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발의
2.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5. 소속 전임교수 3분의 1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기타 소속 대학장 또는 수석평의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8.27.>

제14장 대학평의위원회<신설 2019. 4.11.>

제103조(평의위원회) ① 이 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11.>

② <삭제 2019.4.11.>

제103조의2(대학평의위원회의 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최종 심의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신설 2019.4.11.>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 평의위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단, 평의원이 심의요청 요건을 충족하려면 제103조3의 제2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구성단위의 평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3조의3(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평의위원회는 17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9.4.11.>

②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원대표 8명
2. 직원대표 4명
3. 조교대표 1명
4. 학생대표 3명
5. 총동문회 대표 1명

③ 평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자체평가<개정 2019.4.11.>

제104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평

「학칙」

가로 같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학칙개정<개정 2019.4.11.>

제105조(학칙의 개정) ① 학칙의 개정은 총장이 발의하고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개정 2019.4.11.>

② 총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2.27.>

부칙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본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학칙은 1980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① 다만, 제2조, 제4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의 규정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1980학년도까지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한하여 종전학칙에 한다.

② 1980학년도까지의 입학생중 학적변동자에 대한 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3년 6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4년 8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5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5년 9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만, 체육학과 졸업생들에게 인정하는 체육학사는 198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1986학년도까지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칙

본 개정학칙은 1987년 5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8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②(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12042호 86. 12. 31) 부칙 제 2항에 의거 1981학년도이후 졸업정원이 감축된 학과중 예·체능계열의 졸업정원은 학칙 제2조에 의한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학년도부터 1989학년도까지의 졸업정원은 감축되기 이전의 100명으로 한다.

③(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대학에 입학하여 1990학년도 이전에 졸업하게 되는 자에 한 하여는 제2조, 제46조,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9년 12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87. 8. 29) 부칙 제3항에 의거한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조치의 구제대상자는 제11조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0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1년 9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재학 중인 학생은 강릉대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199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28조제5호의 학사경고 횟수는 1992학년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245호>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만,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199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의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264호>

1.(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267호>

1.(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12380호('93.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학칙」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1. 이 학칙은 199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318호>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 제5호의 규정은 1994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353호>

①(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1999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2. 학부로 통합되는 다음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1998학년도까지 동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1999학년도부터는 통합된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 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와 “화학과” 는 “기초과학부” 로
 - 나. 생명과학대학 “수산자원개발학과” 와 “해양생물공학과” 는 “해양생명공학부” 로

부칙<학칙 제381호>

①(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1996학년도 이전에 재료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한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1997학년도이후 세라믹공학과로 입학한 자와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3. 이 학칙 변경당시 전자계산학과, 대기과학과, 수산 해양자원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컴퓨터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해양생명공학부에 각각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칙<학칙 제414호, 1998.6.1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420호, 1998.7.9>

1.(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경과조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이라도 학적변동으로 1999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는 변경학칙을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423호, 1998.8.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430호, 1999.2.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칙」

부칙<학칙 제431호, 1999.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변경당시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물리학전공, 화학전공)에 재적한 학생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② 치의학과 수료학점은 199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449호, 1999.12.7>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7조 제3항은 200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466호, 2000.3.1>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개정학칙 전의 부칙에 명시된 조문은 개정 전 학칙을 준용한다.

② 99학년도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에 입학하여 컴퓨터과학전공에 선발된 학생은 공과대학 전자공학부 컴퓨터과학전공으로 소속 변경한다.

③ 99학년도 공과대학 토목공학정밀기계공학산업공학과군에 입학하여 산업공학과에 선발된 학생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소속으로 한다.

④ 98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공과대학 컴퓨터과학과로 소속 변경한다.

⑤ 자연과학대 컴퓨터과학과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재적생 중 정보전자공학부와 동일한 학년에 복학하는 자는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부 소속으로 한다.

부칙<학칙 제476호, 2000.4.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492호, 2000.9.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0조의2는 200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512호, 2001.2.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524호, 2001.8.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일문제연구소, 영동산업문제연구소, 동해안지역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 보건진료소는 2001년 8월 31일 폐지하며, 이 학칙에 의거 임명된 소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제3조(모집단위 명칭 변경에 따른 학생의 학부 또는 학과 및 전공의 소속변경) 아래의 입학 당시 모집단위 학부 또는 학과 및 전공으로 입학하였으나, 정상적인 학년승급을 통하여 4년 이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는 변경된 학부 또는 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입학당시 모집단위명		명칭변경 후 모집단위명	
학(부)과	전 공	학(부)과	전 공
수학과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통계학과		자연과학부	정보통계전공

「학칙」

자연과학부	통계학전공		
생물학과		자연과학부	생물학전공
대기환경과학과		자연과학부	대기환경과학전공
원예학과		식물응용과학과	
전자공학부		정보전자공학부	
전자공학과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정보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제어계측공학과 전자공학부	제어계측공학전공	정보전자공학부	제어계측공학전공
컴퓨터과학과 전자공학부 정보전자공학부	컴퓨터과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정보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정보전자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전공
공업공학과		환경응용화학공학과	
금속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	

부칙<학칙 제608호, 2001.11.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621호, 2002.3.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625호, 2002.3.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633호, 2002.6.1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에 원예학과,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에 입학하거나 학과를 배정받은 학생은 당시의 학과로 졸업한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2002학년도 이후 식물응용과학과, 환경응용화학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로 배정받은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배정받은 학과)또는 변경된 학과로 각각 졸업할 수 있다.

부칙<학칙 제644호, 2002.9.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평생교육학전공의 폐지는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647호, 2002.11.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664호, 2002.12.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668호, 2003.1.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674호, 2003.2.28>

「학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전학·전과 및 전공변경)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장(교과의 이수와 졸업)은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이더라도 2003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하며 제43조의 졸업인증제 제45조(교과이수), 제47조(심화, 복합, 연계전공)은 학생에게 유리하게 구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학칙 제688호, 2003.9.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696호, 2003.10.2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698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대학의 입학정원)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정보전자공학부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2004학년도 입학한 학생과 전공배정을 같이 받을 경우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전공” 으로 배정한다.

부칙<학칙 제716호, 2004.4.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0조의2 및 제81조는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721호, 2004.6.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743호, 2005.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5학년도 이전 화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화학신소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② 2004학년도 이전 자연과학부에 입학하여 학과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자연과학부(수학전공, 정보통계전공, 물리학전공, 생물학전공, 대기환경과학전공) 또는 화학신소재학과 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2004학년도 이전에 신소재·환경응용화학공학과군에 입학하여 학과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세라믹공학과, 환경응용화학공학과, 금속재료공학과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2004학년도 이전에 정밀기계·토목공학과군에 입학하여 학과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정밀기계공학과, 토목공학과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 할 수 있다.

부칙<학칙 제744호, 2005.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대학의 입학정원)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3학년도 이전에 정보전자공학부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2004학년도 입학한 학생과 전공배정을 같이 받을 경우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전공” 으로 배정하고, 2005년 2월부터 졸업하는 제어계측공학전공 졸업자는 제어계측공학전공 또는 전자공학전공으로 졸업한다.

부칙<학칙 제751호, 2005.4.1>

「학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781호, 2005.6.1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795호, 2005.10.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797호, 2005.12.29>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806호, 2006.1.1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813호, 2006.2.24>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821호, 2006.5.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824호, 2006.6.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833호, 2006.1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837호, 2007.1.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846호, 2007.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및 60조의 규정은 2007학년도 입학 생과 이와 동등한 과정을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학칙 및 규정의 폐지)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원주대학에 적용하던 학칙과 제반 규정은 폐지한다. 단, 폐지되지 않는 “원주대학유치원원칙 및 원주대학 유치원교원인사관리규정”은 “강릉대학교 원주캠퍼스유치원원칙 및 강릉대학교 원주캠퍼스유치원교원인사 관리규정”으로 한다.

②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시행중인 이 대학교의 규정, 규칙, 예규, 지침 등은 이 학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학칙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정, 규칙, 예규, 지침 등에서 인용된 종전 학칙의 조항은 이 학칙의 해당조항으로 본다.

제3조(폐지되는 원주대학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립학교설치령」(2007. 2. 28개정)에 의해 폐지되는 원주대학은 2006학년도 신입생이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09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원주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원주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9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립학교설치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전문대학이나 강릉대학교에 각각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속이 변경되는 학과(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소속이 변경되는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과 공과대학 신소재·응용공학과군 정밀기계공학과 및 예술·체육대학 음악과에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부

「학칙」

컴퓨터공학전공의 학생은 문화산업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의 재적생으로, 공과대학 신소재·응용공학과군 정밀기계공학과 학생은 문화산업대학 기계자동차공학부 정밀기계공학전공의 재적생으로,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학생은 문화산업대학 음악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재적생의 원에 의하여 소속 변경 전 학과(부)로 졸업할 수 있다.

제5조(모집단위가 분리되는 학과군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모집단위가 분리되는 인문대학군의 재적생중 학과배정을 받지 못한 자는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본학과 및 철학·사학과군으로 학과 배정을 한다.

부칙<학칙 제891호, 2007.10.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897호, 2007.12.10>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908호, 2008.2.27>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913호, 2008.3.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916호, 2008.4.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926호, 2008.6.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941호, 2008.11.1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946호, 2009.1.23>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947호, 2009.1.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957호, 2009.3.18>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강릉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강릉원주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강릉대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강릉원주대학교 소속 학생으로 각각 본다.

부칙<학칙 제1102호, 2009.7.3>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강릉원주대학교의조직설치운영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제17호·제18호·제20호·제21호 및 제32호 중 “(대학원 포함)” 을 각각 “(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포함)” 으로 한다.

제7조 제2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7호·제18호·제19호·제20호·제22호·제23호·제24호·제25호·제27호 및 제28호 중 “(대학원 포함)” 을 각각 “(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포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학칙」

3. 입학(전형 및 납입금 징수업무 제외, 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포함)

5. 등록업무(납입금 징수업무 제외, 대학원 및 산업대학원 포함)

부칙<학칙 제1105호, 2009.7.2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109호, 2009.9.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119호, 2009.10.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124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9학년도 이전에 사회과학대학 지역개발학과와 생명과학대학 해양생명공학부 해양식량공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도시계획부동산학과와 해양식품공학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도시계획부동산학과나 해양식품공학전공으로 입학하거나 배정받은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나 배정받은 전공 또는 변경된 학과나 전공으로 각각 졸업할 수 있다.

② 2009학년도 이전에 식품과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당시의 학과로 졸업한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식품영양학과나 식품가공유통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③ 2009학년도 이전에 공과대학 세라믹공학과와 금속재료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세라믹신소재공학과와 신소재금속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9학년도 이전에 신소재·토목공학과군에 입학하여 학과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세라믹신소재공학과와 신소재금속공학과, 토목공학과” 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 할 수 있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세라믹신소재공학과와 신소재금속공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④ 2009학년도 이전에 문화산업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문화대학과 과학기술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문화대학과 과학기술대학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대학이나 또는 변경된 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⑤ 2009학년도 이전에 문화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기술공학 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기술공학과와 재적생으로 보며, 2009학년도 이전에 컴퓨터정보공학부에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기술공학과” 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기술공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전공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⑥ 2009학년도 이전에 문화산업대학 전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전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와 재적생으로 보며, 2009학년도 이전에 전기정보통신 공학부에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2010학년도 이후 전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칙」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전공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⑦ 2008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의 수학전공, 정보통계전공, 물리학전공, 생물학전공, 대기환경과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8학년도 이전에 자연과학부에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2009학년도 이후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전공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⑧ 2008학년도 이전에 공과대학 정보전자공학부의 “전자공학전공, 산업시스템공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전자공학과, 산업정보경영공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2008학년도 이전에 정보전자공학부에 입학하여 전공배정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은 “전자공학과, 산업정보경영공학과” 중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2009학년도 이후 전자공학과, 산업정보경영공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 당시의 전공 또는 변경된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⑨ 2007학년도 이전에 식물응용과학과에 입학하거나 학과를 배정받은 학생은 당시의 학과로 졸업한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2008학년도 이후 식물생명과학과로 입학한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 또는 변경된 학과로 각각 졸업할 수 있다.

⑩ 2004학년도 이전에 해양발생공학전공으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당시의 학과로 졸업한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2005학년도 이후 해양분자생명공학전공을 전공한 학생과 같이 졸업 시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받은 전공 또는 변경된 전공으로 각각 졸업할 수 있다.

부칙<학칙 제1136호, 2010.2.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144호, 2010.5.12>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학원과 특수대학원 관련내용은 2010.7.1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의 폐지) 이 학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강릉원주대학교대학원학칙, 강릉원주대학교경영·정책과 학대학원학칙, 강릉원주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 강릉원주대학교산업대학원학칙”은 2010.7.1부터 폐지한다.

제3조(부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전의 부칙규정(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학칙의 부칙규정을 포함한)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시행 중인 이 대학교의 규정, 규칙, 지침 등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의 규정, 규칙, 지침 등에서 인용된 종전 학칙의 조항은 이 학칙의 해당 조항으로 본다.

부칙<학칙 제1146호, 2010.7.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160호, 2010.12.1>

제1조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칙」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교육대학원 전공의 수료자가 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는 폐지된 전공의 학위를 취득한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생명과학대학 해양생명공학부 해양식품공학전공, 해양자원육성전공, 해양생물공학전공, 해양분자생명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과 재직 중인 교직원은 각각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공학과와 재적생과 재직자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생명과학대학 해양생명공학부 해양식품공학전공, 해양자원육성전공, 해양생물공학전공, 해양분자생명공학전공으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공학과 중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로 배정한다.

④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공과대학 환경응용화학공학과, 예술체육대학 산업공예학과, 문화대학 의상디자인학과에 재적중인 학생과 재직 중인 교직원은 각각 생명화학공학과, 공예조형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의 재적생과 재직자로 본다.

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생명과학대학 해양생명공학부 해양식품공학전공, 해양자원육성전공, 해양생물공학전공, 해양분자생명공학전공, 공과대학 환경응용화학공학과, 예술체육대학 산업공예학과, 문화대학 의상디자인학과로 입학한 재적생이 졸업하게 될 때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학당시의 전공 및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칙<학칙 제1164호, 2010.1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165호, 2011.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167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72조제6항 별표Ⅶ의 체육교육전공 무 논문학위과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1174호, 2011.2.28>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1181호, 2011.4.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193호, 2011.9.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199호, 2011.12.1>

제1조(시행일)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별표 [Ⅱ] 와 [V] 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산업대학원 환경응용화학공학과, 산업대학원 해양생명공학과(생물과학전공), 멀티미디어정보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생명화학공학과, 해양생명공학과(해양식품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과와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일반·산업대학원 환경응용화학공학과, 산업대학원 해양생명공학과(생물과학전공), 멀티미디어정보공학과로 입학한 재적생이 졸업하게 될 때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학당시의 전공

「학칙」

및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부칙<학칙 제1207호, 2011.1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213호, 2012.2.29>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219호, 2012.3.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220호, 2012.3.29>

이 학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248호, 2012.7.2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학칙 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개정 학칙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학칙 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학칙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개정 학칙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학칙 제1271호, 2012.10.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343호, 2012.10.1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제15조의 별표 V는 2013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1360호, 2013.1.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휴학), 제67조(수료학점) 및 별표 I 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379호, 2013.5.2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383호, 2013.6.26>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397호, 2013.9.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소속이 변경되는 공과대학 산업정보경영공학과와 문화대학 음악과 및 패션디자인학과에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201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공과대학 산업정보경영공학과와 문화대학 음악과 및 패션디자인학과에 재적생으로, 문화대학 음악과 및 패션디자인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각각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및 패션디자인학과에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재적생의 원에 의하여 소속 변경 전 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제3조(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인문대학 유아교육과에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201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재적생의 원에 의하여 소속 변경 전 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학칙」

제4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문화대학 여성인력개발학과의 존속은 2016학년도까지로 한다. 다만, 2016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도 학생이 입학 당시 학과로 학위수여를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또는 타 학과, 전공으로의 전과를 희망할 경우 제39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학 학년과 여석에 관계없이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여성인력개발학과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타 학과로의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단과대학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단과대학 명칭이 변경되는 문화대학 유아교육과와 간호학과에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2016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각각 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와 간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재적생의 원에 의하여 소속 변경 전 대학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제6조(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에 관한 적용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모집한 201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신입생은 개정된 학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수시모집 요강 적용례) 이미 공고된 2014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개정된 학칙에 의해 공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학칙 제1410호, 2013.11.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별표Ⅱ의 일반대학원 과정별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428호,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6조, 제6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1458호, 2014.4.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463호, 2014.4.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종전의 학칙 제65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졸업예정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14학년도까지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부칙<학칙 제1472호, 2014.7.2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480호, 2014.8.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에 산업정보경영공학과에 입학하거나 학과(전공)를 배정받은 학생은 변경된 산업경영공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16.12.30., 2018. 9.11.>

부칙<학칙 제1486호, 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미술교육전공의 무논문학위과정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1497호, 2015.1.29>

「학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4조, 제56조의 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64조제1항은 2015년도 2월 수료사정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1505호, 2015.2.2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62조제4항 재이수 과목의 성적 적용에 대해서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1510호, 2015.3.30>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528호, 2015.6.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에 해양분자생명공학학과에 입학하거나 학과(전공)를 배정받은 학생은 변경된 해양분자생명과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8. 9.11.>

부칙<학칙 제1535호, 2015.8.19 >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539호, 2015.8.27.>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544호, 2015.11.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566호, 2016.4.1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589호, 2016. 5. 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중 별표 I 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에 복지학과, 정보기술공학과에 입학하거나 학과(전공)를 배정받은 학생은 변경된 사회복지학과, 소프트웨어학과의 재적생으로 보며,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입학당시의 학과로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 9.11.>

부칙<학칙 제1605호, 2016.7.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624호, 2016.9.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644호, 2016.12.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64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5항에 따른 별표Ⅷ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칙」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일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조직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조직에서 승계한다.

대외협력부총장	원주캠퍼스부총장
제1행정실, 제2행정실, 제3행정실, 제4행정실	단과대학 통합 행정실
관리지원팀 및 제5행정실	통합 행정지원부
교육지원과 소관사무 중 대학원에 관한 사항	대학원 통합 행정실
제1행정실, 제2행정실, 제3행정실, 제4행정실 소관사무 중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 및 평생교육원 소관사무	부속시설 통합 행정실

부칙<학칙 제1684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교과과외수), 제62조(학업성적) 및 별표 VI 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1693호, 2017. 3. 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727호,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 제6호, 제7호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고, 제8호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1729호, 2017.11.28.>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735호, 2018. 1.24.>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739호, 2018. 2.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756호, 2018. 3.28.>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학칙 제1765호, 2018. 6.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2018년 8월 학위수여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1765호, 2018. 6.15.>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학년도 1학기에 개설한 창업실습 I 교과목은 이 학칙에 의해 개설된 것으로 본다.

부칙<학칙 제1780호, 2018. 9.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782호, 2018. 11.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791호, 2018.12.31.>

「학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800호, 2019. 2.1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및 별표 I 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800호, 2019. 2.1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및 별표 I 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820호, 2019. 3. 15.>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1830호, 2019. 4.1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칙」

(서식 제1-1호)

제 〇〇〇〇 호
학 위 증
〇 〇 〇 〇 〇〇〇〇 년 〇 월 〇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 (전공, 전공, 부전공)을 이수 하고 〇〇 학사 및 〇〇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합니다.
〇〇〇〇 년 〇 월 〇〇 일
강릉원주대학교총장 〇〇박사 〇 〇〇 (인)
학위번호: 강릉원주대〇〇〇〇학〇〇〇〇

210mm×297mm

(서식 제1-1-1호) (주전공용)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upon	
(영문 성명)	
the degree of	
(영문 학위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pertaining. Given under the seal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학위 수여 일자).	
(총장 서명)	(대학장 서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ean of the College of
	(소속 대학 영문명)
Diploma No. GWNU〇〇〇〇BA〇〇〇〇	

210mm×297mm

「학칙」

(서식 제1-1-2호) (복수전공용)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upon	
(영문 성명)	
the degree of (영문 학위명) and the degree of (영문 학위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pertaining. Given under the seal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학위 수여 일자).	
(총장 서명)	(대학장 서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ean of the College of (소속 대학 영문명)
	(대학장 서명)
	Dean of the College of (소속 대학 영문명)
Diploma No. GWNU○○○○BA○○○○	

210mm×297mm

(서식 제1-1-3호) (부전공용)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upon	
(영문 성명)	
the degree of (영문 학위명)	
(minor : 영문 전공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pertaining. Given under the seal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학위 수여 일자).	
(총장 서명)	(대학장 서명)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ean of the College of
	(소속 대학 영문명)
Diploma No. GWNU○○○○BA○○○○	

210mm×297mm

「학칙」

(서식 제1-2호)

제 〇〇〇〇 호

수 료 증 서

〇 〇 〇 〇
〇〇〇〇년 〇월 〇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〇〇대학 〇〇학과(부)(전공, 전공, 부전공)에
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〇〇〇〇년 〇월 〇〇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〇〇박사 〇〇〇 인

210mm×297mm

(서식 제1-3호)

제〇〇〇〇 호

수 료 증 서

〇 〇 〇 〇
〇〇〇〇 년 〇 월 〇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〇〇대학 〇〇학과(부)에서 〇학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〇〇〇〇 년 〇 월 〇〇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〇〇박사 〇〇〇 (인)

210mm×297mm

「학칙」

(서식 제1-4호)

제○○○○ 호

명 예 졸 업 증 서

○ ○ ○
○○○○ 년 ○ 월 ○ 일생

위 사람은 년 월 강릉원주대학교 대학 학과(부, 전공)에 입학하여 재학 중
-----함으로써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한 공로가 지대하였으므로 그 공적을 찬양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총장 ○○박사 ○ ○ ○ (인)

「학칙」

(서식 제2-1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 ○ ○	
○○○○ 년 ○ 월 ○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에서 서기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연구생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증명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장 인	

210mm×297mm

(서식 제2-2호)

제 호	
수 료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수료년월일:	년 월 일
위 사람은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학위과정 학과 전공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강 릉 원 주 대 학 교 총 장	

(서식 제3-1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000학 석사 (전공명)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장 직인			
위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총장 직인			

(서식 제3-2호)

연구실적증명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본 대학원 학 전공 연구생 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학하고 그 연구실적이 양호함으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장 직인			

「학칙」

(서식 제4-1호)

제 호
수 료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교육대학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구생 과정을 이수하였기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인

210mm×297mm

(서식 제4-2호)

연구실적증명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이 대학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으로 연구하였기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인

(서식 제4-3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 과정에서 ○○○전공의
전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210mm×297mm

「학칙」

(서식 제5-1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원 학과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사학위 과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산업대학원장
학위 성 명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총장
학위 성 명 인

210mm×297mm

(서식 제5-2호)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줌.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산업대학원장 인

210mm×297mm

(서식 제5-3호)

대학원 연구 실적 증명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이 대학원에서 학과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구생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강릉원주대학교 산업대학원장 인

210mm×297mm

「학칙」

(별표 I)<개정 2010.12.1, 2012.2.29, 2013.1.15, 2013.9.3, 2014.8.28., 2015.6.29., 2016.5.30., 2017.11.28., 2019. 2.13., 2019. 3.15.>

강릉원주대학교 입학정원

대학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비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3	
	영어영문학과	32	
	독어독문학과	18	
	중어중문학과	25	
	일본학과	24	
	철학과	23	
	사학과	20	
소 계		175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31	
	회계학과	34	
	관광경영학과	43	
	경제학과	33	
	무역학과	32	
	국제통상학과	36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5	
	법학과	33	
	자치행정학과	34	
소 계		311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29	
	정보통계학과	29	
	물리학과	25	
	생물학과	24	
	대기환경과학과	34	
	화학신소재학과	34	
소 계		175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31	
	식품가공유통학과	30	
	해양식품공학과	35	
	해양자원육성학과	33	
	해양생물공학과	32	
	해양분자생명과학과	31	
	식물생명과학과	34	
	환경조경학과	31	
소 계		257	

「학칙」

대학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비고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81	
	세라믹신소재공학과	29	
	신소재금속공학과	31	
	토목공학과	39	
	생명화학공학과	30	
소 계		210	
예술체육대학	조형예술·디자인학과 (미술, 도자디자인, 섬유디자인)	50	
	체육학과	37	
	음악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32	
	패션디자인학과	27	
소 계		146	
치과대학	치의예과	40	
	치의학과	[40]	
	치위생학과	30	
소 계		70 [40]	
강릉캠퍼스 계		1,344 [40]	

대학	모 집 단 위	입학정원	비고
보건복지대학	유아교육과	60	
	간호학과	75	
	사회복지학과	30	
	다문화학과	30	
소 계		195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72	
	멀티미디어공학과	32	
	소프트웨어학과	32	
	전기공학과	32	
	정보통신공학과	31	
	기계공학과	59	
	자동차공학과	33	
	산업경영공학과	35	
소 계		294	
원주캠퍼스 계		489	
합 계		1,833 [40]	

「학칙」

(별표 Ⅱ)[개정 2010.12.1, 2011.12.1, 2012.10.11, 2013.11.27, 2014.4.23., 2014.10.30., 2015.11.2., 2016.9.28., 2018. 6.15., 2018.11. 1.]

일반대학원 과정별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

캠퍼스	구분	박사 과정	입학 정원	석사 과정	입학 정원
		학과명(전공)		학과명(전공)	
강릉	인문· 사회계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교육학과, 경영학과, 관광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지역개발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2개전공) - 경영학전공 - 회계학전공 *지역개발학과(2개전공) - 지역계획학전공 - 개발행정학전공	43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관광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지역개발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지역개발학과(3개 전공) - 지역경제학전공 - 지역계획학전공 - 개발행정학전공	116
	자연 과학계	수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화학과, 식품과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 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응용 생명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원예학과, 치위생학과 *식품과학과(2개전공) - 식품영양학전공 - 식품가공학전공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화학과, 식품과학과, 식품 영양학과, 식품가공유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 응용생명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과학과, 원예학과, 환경조경학과, 치위생학과	
	공학계	전자공학과,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토목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예.체 능계	미술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체육학과 *체육학과(2개전공) - 체육인문사회과학전공 - 체육자연과학전공		미술학과, 음악과, 패션디자인학과, 체육학과	
	의학계	*치의학과(16개전공) -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 치과생체재료학 - 생리학 및 신경과학 - 약리학 - 미생물학 및 면역학 - 해부학 - 병리학 - 치과보철학 - 치주과학 - 예방치학 - 구강악안면외과학 - 소아청소년치과학		* 치의학과(16개전공) -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 치과생체재료학 - 생리학 및 신경과학 - 약리학 - 미생물학 및 면역학 - 해부학 - 병리학 - 치과보철학 - 치주과학 - 예방치학 - 구강악안면외과학 - 소아청소년치과학	

「학칙」

		- 구강내과진단학 - 영상치의학 - 치과보존학 - 치과교정학		- 구강내과진단학 - 영상치의학 - 치과보존학 - 치과교정학	
	학과간 협동 과정	-해양바이오산업(해양생물공학, 해양응용 생명공학, 생물학, 대기환경과학, 식품과학) -환경기술(생물학, 대기환경과학, 식품과학, 해양생물공학, 해양자원육성, 해양응용생명 공학, 원예학, 환경조경, 정밀기계공학, 생명화학공학, 토목공학) -공간정보(지역개발학, 생물학, 대기환경과학, 해양생물공학, 환경조경학, 토목공학, 치의학)		-기록관리(사학, 법학, 행정학, 전자공학) -해양바이오산업(해양생물공학, 해양응용생명 공학, 생물학, 대기환경과학, 식품과학) -환경기술(생물학, 대기환경과학, 식품과학, 해양생물공학, 해양자원육성, 해양응용 생명공학, 원예학, 환경조경, 정밀기계공학, 생명화학공학, 토목공학) -공간정보(지역개발학, 생물학, 대기환경 과학, 해양생물공학, 환경조경학, 토목공학, 치의학) -신소재기술(화학신소재학, 신소재금속공학, 국제통상학)	
	학 연 협 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강릉분원(화학, 생물학, 식품과학, 해양생물공학, 해양응용생명공학, 원예학, 전자공학, 생명화학공학, 토목공학, 치의학) -한국식품연구원(해양식품공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강릉분원(화학, 생물학, 식품과학, 해양생물공학, 해양응용생명공학, 원예학, 전자공학, 생명화학공학, 토목공학, 치의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화학신소재, 신소재 금속공학) -한국식품연구원(해양식품공학)	
	소계	33개 학과, 5개 협동과정	43	42개 학과, 8개 협동과정	116
원주	인문 사회계	유아교육과	11	유아교육과, 다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27
	자연 과학계	간호학과		간호학과	
	공학계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밀기계 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산업공학과, 소프트 웨어학과, 전기공학과, 기계의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소프트 웨어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기계의용공학과, 자동차 공학과, 산업공학과	
	소계	10개 학과		13개 학과	
합계	43개 학과, 5개 협동과정	54	55개 학과, 8개 협동과정	143	

「학칙」

(별표 Ⅲ)[개정 2010.12.1, 2011.2.28., 2015.1.29., 2017.2.8.]

경영·정책과학대학원 학생정원표

캠퍼스	과정	설치학과	전 공	입학정원
강릉	석사	경 영	경 영 학	29
		회 계	회 계 학	
		지역개발	사회적경제	
			도시관리	
			발전행정	
		산업경제	산업경제	
		법률정책	헌 법	
			민사법	
			형사법	
			기업법	
			행정법	
		국제비즈니스	국제무역	
			국제경제	
			국제경영	
		관 광	관 광 학	
		행 정	행 정 학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국제통상	국제통상학			
안보국방정책	국방정책학			
	안보정책학			
소 계	11개 학과	20개 전공		
원주	석사	국제무역통상	국제무역통상학	12
		안보전략	안보전략학	
			국방전략학	
	관광경영	관광경영학		
소 계	3개 학과	4개 전공		
합 계		14개 학과	24개 전공	41

「학칙」

(별표 IV)[개정 2010.12.1., 2014.10.30., 2017.2.8., 2018. 3.28.]

교육대학원 학생정원표

캠퍼스	과정	학과	전 공	입학정원
강릉	석사학위	교육	교육학전공, 교육행정전공, 상담심리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철학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영양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음악교육전공	86 (양성과정 53명)
			소계	17개 전공
원주	석사학위	교육	유아교육전공, *컴퓨터교육전공	26 (양성과정 3명)
			소계	2개 전공
합계			19개 전공 (양성과정 15개, 재교육과정 4개 전공)	112
연구과정			각 전공	약간명

※ 양성과정(*표시)정원 입학정원에 포함

(별표 V)[개정 2010.12.1, 2011.12.1, 2012.10.8., 2014.10.30., 2015.11.2.]

산업대학원 학과별 학생정원

캠퍼스	과정	학과	입학정원
강릉	석사	재료공학과, 전자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예학과, 식품과학과, 해양생명공학과(양식전공, 해양식품공학전공, 해양생물공학전공), 환경조경학과, 산업미술학과(요업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전공)	21
		소계	10개학과 5개전공
원주	석사	소프트웨어학과, 기계의용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기술경영학과, 바이오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조경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13
		소계	13개학과
	합계	23개학과 5개전공	34

「학칙」

(별표 VI)[개정 2010.12.1, 신설 2014.7.25., 개정 2015.8.19., 2016.5.30., 2017.2.8.]

학과(부) 및 전공별 학위 수여표

1. 강릉캠퍼스

학 위	대 학	학 과
문 학 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일본학과, 유아교육과
	연계전공	인문콘텐츠 융합전공<신설>
경 영 학 사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관광경영학과
경 제 학 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무 역 학 사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국제통상학사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연계전공	중국통상전공
지리정보학사	연계전공	지리정보시스템전공
행 정 학 사	사회과학대학	자치행정학과
법 학 사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이 학 사	자연과학대학	화학신소재학과,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대기환경과학과
	연계전공	공통과학전공, 환경융합과학전공
	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식품가공유통학과,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과학과(해양분자생명공학과), 환경조경학과
공 학 사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산업정보경영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토목공학과, 신소재금속공학과, 세라믹신소재공학과,
농 학 사	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과학과
미 술 학 사	예술·체육대학	미술학과,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음 악 학 사	예술·체육대학	음악과
예 술 학 사	예술·체육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체 육 학 사	예술·체육대학	체육학과
치 의 학 사	치과대학	치의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2. 원주캠퍼스

학 위	대 학	학 과
문 학 사	문화대학	유아교육과, 여성인력개발학과
	보건복지대학	다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복지학과), 유아교육과
간 호 학 사	문화대학	간호학과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공 학 사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정보기술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부(정밀기계공학전공, 기계의용공학전공, 자동차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산업정보경영공학과)
음 악 학 사	문화대학	음악과
예 술 학 사	문화대학	패션디자인학과

「학칙」

(별표 VII)[개정 2010.12.1, 2011.1.28., 2014.10.30., 2017.2.8.]

교육대학원 전공별 학위과정 구분

캠퍼스	전공명	논문학위	무논문학위	비고
강릉	교육학	○	○	
	교육행정	○	○	
	상담심리	○	○	
	국어교육	○	○	
	영어교육	○		
	중국어교육	○	○	
	윤리교육	○		
	철학교육	○		
	역사교육	○	○	
	수학교육	○	○	
	물리교육	○		
	화학교육	○	○	
	생물교육	○		
	영양교육	○	○	
	미술교육	○	○	
	체육교육	○	○	
	음악교육	○	○	
원주	유아교육	○	○	
	컴퓨터교육	○	○	
	음악교육	○	○	2017학년도 재학생 및 휴학생이 수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학칙」

(별표 VIII)

통합 행정실

1. 강릉캠퍼스

대학(원)명	행정실명
인문대학	단과대학 통합 행정실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치과대학	

2. 원주캠퍼스

대학(원)명	행정실명
보건복지대학	통합 행정지원부
과학기술대학	

3. 대학원

대학원 명	행정실명
일반대학원	대학원 통합 행정실
교육대학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산업대학원	